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15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5317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12. 20.

판 결 선 고 2019. 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6. 원고에게 한 재산세 93,480,870원, 지방교육세 14,335,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15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7. 6. 1. 현재 B지역 내에 위치한 [redacted]구 C 대 7,015㎡(이하 '①토지'라 한다), [redacted]구 D 전 156㎡(이하 '②토지'라 한다), [redacted]구 E 답 7,864㎡(이하 '③토지'라 한다), [redacted]구 F 답 3,560㎡(이하 '④토지'라 한다), [redacted]구 G 대 3,934㎡(이하 '⑤토지'라 한다), [redacted]구 H 답 3,931㎡(이하 '⑥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중 ①토지와 ③~⑥토지는 연접하고 있고, ②토지는 ①토지 및 ③~⑥토지와 분리되어 있다. 원고 소유 토지 중 ①토지 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즙 2층 건물 공장 1동 1층 245평, 2층 24.5평, 세멘브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공장 및 변전실 1동 157.45평, 연와조 스라브즙 2층 건물 기숙사 및 식당 1동 1층 75.77평, 2층 17.69평, 지층 10평, 연와조 스라브즙 평가건 수위실 1동 4.93평, 세멘브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변소 1동 3.63평, 세멘브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변소 1동 2.26평, 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고, ③~⑥토지 위에는 다수의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면서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②토지는 이 사건 공장건물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①, ②토지(면적 합계 7,171㎡)를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한편, ③~⑥토지(면적 합계 19,28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7. 9. 6.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2017년도 재산세 93,480,870원, 지방교육세 14,335,25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15

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원고 소유 토지는 그 전부가 일체가 되어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원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공장건물의 바닥면적에 녹지지역의 적용배율(7배)을 곱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①, ②토지만을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15

세대상(제2호 가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redacted]광역시 안에 위치한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인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7배를 곱하여 산정한 범위 내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고,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 참조).

2) 갑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공장용도로 이용되는 다수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고, 그 무허가 건축물들의 주위로 군데군데 공터가 있는 구조인데, 그와 같은 공터는 무허가 건축물들에 입주한 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와 제품의 운반과 상하차 등을 위한 공간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점, ② ①토지에는 이 사건 공장건물 및 그 주위의 공터가 있고, 이 사건 공장건물에 입주한 공장들은 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와 제품의 운반과 상하차 등을 위한 공간으로 주로 그 공터를 이용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공장건물은 차량 진출입구의 바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15

옆에 위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장건물에 입주한 공장으로 원자재와 제품 등을 운반하는 차량은 주로 ①토지 위의 공터를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점(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건물에 입주한 공장 중 일부 공장의 경우에만 원자재와 제품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로로 이 사건 토지 위의 공터의 일부를 이용할 뿐이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위치한 무허가 건축물들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완

판사 장원정

판사 정유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15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15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